박경신 토론문 - <오픈넷포럼>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문제 2016.3.21.

개인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요건이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가 아니며 개인정보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
하지만 식별가능성은 누구의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통사가 가진 각 고객의 통화기록은 어느 통화기록이 누구의 것인지 식별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이통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다.
하지만 고객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들은 이용자들의 통화기록이라고 할지라도 전화번호, 통화시간, 상대방 번호 만으로는 어느 이용자의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통사는 고객의 통화기록에서 신원정보를 제거하여 즉 비식별화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이통사는 개인정보를 준 것이지만 제3자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받은 셈이 된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문제는 이통시가 비식별화한 카피를 만드는 것이지 원본데이터베이스는 식별화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는 점이다. 즉 비식별화를 한 카피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원본 통화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기능을 이용해 '언제 누구와 몇시에 통화한 사람'을 검색해보면 통화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넘겨준 후에 제3자가 그것이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자유롭게 가공하여 이통사가 원래 생각하지 못했던 목적의 다양한 연구나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나중에 제3자의 연구결과나 마케팅 자료를 보면 이통사는 원본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한 고객을 식별해낼 수 있게 된다.

즉 이통사가 원래 고객들과 계약할 때 상정했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정보가 이용된 결과물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2015년 12월에 유럽에서 합의된 GDPR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공한다.
위와 같이 재식별화가 가능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되 몇가지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대해 예외를 둔다.

제6조 제3a항 - "암호화 및 가명화(pseudonymization)" 등을 고려하여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가능.
단, 제60a조 - 가명화할 때는 실명화되지 않기 위한 기술적 조치 요구, 예) 암호화
Article 29 Working Party - "가명화는 익명화는 아니다. 그러나, 재실명화가 합리적으로 개연성이 있을 때("reasonably likely") 익명화가 아니라는 뜻이다."

제83조 - 과학, 역사, 통계 목표의 이용을 위해서는 가명화를 할 것.
제23조 - 디자인에 의한 개인정보(data protection by design)의 핵심이 가명화
제30조, 제38조 - 되도록 가명화 상태로 유지할 것 요구

자, 만약 원본까지 모두 비식별화한 경우는 어떠할까?